

2022. 3. 25. ~ 29.

- 5일간 -

제33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
집 회 결 과



장 성 군 의 회

처리 결과

의안 번호	의안명	의결 일자	심사 결과
2252	장성군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	3. 29.	수정가결
2253	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3. 29.	원안가결
2254	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	3. 29.	원안가결
2255	2021회계연도 세입·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	3. 29.	원안가결

주요내용

1. 장성군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○ 제출자 : 장성군수

○ 제출일자 : 2022. 3. 21.

○ 제안이유

- 노인단체 운영과 노인사회참여 및 휴식과 문화공간 등 노인복지 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“장성군 노인회관”을 설치하고 이의 관리 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함

○ 주요내용

- 노인회관의 명칭, 위치 (안 제2조, 제3조)
 - “장성군 노인회관”, 장성읍 영천로 90
- 노인회관 업무(안 제4조)
 - 노인단체 각종 행사, 노인대학 운영, 노인 여가 및 취미생활 등
- 노인회관 관리위탁운영 및 수탁자의 의무(안 제7조 ~ 제8조)
 -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, 노인단체 위탁 가능, 위탁기간 5년 이내
- 경비의 지원(안 제10조)
 - 노인회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
- 관리감독 (안 제11조)
 - 년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과 시설물관리 실태조사
- 자체운영 규정 (안 제13조)
 - 노인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 규정으로 정함

○ 의결결과 : 수정가결

장성군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

장성군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제7조(관리위탁운영) ③항에르고, 2항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 「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 체결하여야 한다.를 삽입하고
- 제13조(준용)에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을 「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로 수정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7조(관리위탁운영) ③제2항의 관리위탁 계약기간은 「장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」를 따른다.</p> <p>④수탁자는 그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.</p>	<p>제7조(관리위탁운영) ③제2항의 관리위탁 계약기간은 「장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」를 따르고, 2항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 「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 체결하여야 한다.</p> <p>④수탁자는 그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.</p>
<p>제13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「장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</p>	<p>제13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「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및 「장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</p>

2.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제 출 자 : 장성군수

○ 제출일자 : 2022. 3. 21.

○ 제안이유

- 상위법 「건축법시행령」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

○ 주요내용

- 건축법시행령 인용 조항 개정(안 제48조 제5항, 제6항)
 -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조항이 변경되어 조례에 반영
-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 변경(안 제48조제6항제2호)
 - 「건축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다양한 경관 창출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높은 건물의 주된 개구부가 낮은 건물을 향하는 경우 낮은 건물 높이의 0.5배(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0.25배) 이상 으로 기준 변경

○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3. 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

○ 제 출 자 : 장성군수

○ 제출일자 : 2022. 3. 21.

○ 제안이유

- 「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노인복지회관관련 조례가 「장성군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」로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삭제하고 「문화예술진흥법」에 따라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.

○ 주요내용

- 목적, 정의, 위치(안 제1조 ~ 제3조)
-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(안 제4조 ~제 8조)
-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(안 제9조 ~제 15조)
- 관람권 발행 및 시설 사용(안 제16조 ~ 제 20조)

○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4. 2021회계연도 세입·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

○ 제출자 : 임동섭 의장

○ 제출일자 : 2022. 3. 21.

○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」 및 「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」의 규정에 의하여 2021회계연도 세입·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함.

○ 주요 내용

가. 검사위원수 : 5명(의장추천 4, 군수추천 1)

나. 활동기간 : 2022. 4. 6. ~ 4. 25. / 20일간

※의회 필요시 연장가능

다. 활동사항 :

- 2021회계연도 세입·세출 결산검사
- 검사의견서 제출

○ 의결결과 : 원안가결